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朴芝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32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朴芝源 · 박희승 · 김성범
문대림 · 문금주 · 이춘석
김의겸 · 문진석 · 이성운
이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은 장시간 야외작업, 농약·분진·소음·진동·온열환경 노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순환계·호흡계 질환, 손상·중독 등 직업성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이고, 실제로 농어업인은 비농어업인에 비해 다빈도 질환의 연령표준화 유병률과 질병 의료비용 본인부담금이 높고,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일반인보다 18~20%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은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고 있으나, 남성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농어업 작업 특성을 반영한 건강검진 지

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바, 남성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질환의 예방·치료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배제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조사 및 지원에”를 “조사,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및 지원의 규모·방법 등에”로 한다.

다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① ~ ③ (생략)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u>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u>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 ----- ----- <u>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u>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u>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 <u>조사,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및 지원의 규모·방법 등에</u> --- -----.